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 경, 강석주, 김성준,
박강산, 박승진, 송도호,
아이수루, 유정희, 이원형,
이종태, 임규호, 최재란,
한 신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미술관의 자료수집은 작품 연구의 수준과 전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자 미술관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요소로써 서울시립미술관은 3년마다 ‘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.
- 하지만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주요 정책이 결여되었기에,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.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(안 제21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,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
2.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
3.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
4.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1조(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)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, 소장하기 위하여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<u>제21조(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,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</u> <u>2.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</u> <u>3.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</u> <u>4.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제21조의 조제목을 변경하고,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¹⁾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또한 통상 기본계획 수립 시 출연연구기관(서울연구원 등) 연구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토대로 추정할 시 해당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소요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

※ 종합계획 수립방식 예시

- ① 학술용역(실태조사 등)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
- ② 출연연구기관 연구수행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